

##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채용 변경공고

우리 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 
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. 9. 23.

인천광역시검단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# 1. 임용분야 및 인원

| 임용<br>직위 | 임용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발<br>인원 | 근무<br>기간 | 담당직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건소장     | 지방과학기술서기관<br>또는<br>일반임기제공무원<br>(개방형4호) | 1명       | 2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보건소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<li>·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</li><li>·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</li><li>· 구강 및 영양관리사업,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</li><li>·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</li><li>· 모자보건, 노인보건, 정신건강, 장애인 재활, 방문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</li><li>· 예방접종 업무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</li><li>· 의료인·의료기관 및 의료기사 관리에 관한 사항</li><li>· 약사 및 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</li><li>· 기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</li></ul> |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## 2.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- 「지역보건법」 제15조(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)
-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(보건소장)
-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5981호)
-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예규 제352호)

## 3. 임용신분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
  -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임용 당시 민간인의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
-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
  -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)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
## 4. 응시자격요건

- 공통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예정일)

| 구분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결격사유 |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|    |
| 응시연령 | 만 18세 이상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성별   | 제한없음(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거주지  | 제한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국적   |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○ **자격요건**(「지역보건법」 제15조 등) \*필수요건 응시자격 확대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필수요건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,<br>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,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,<br>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경력요건</b><br>(1개이상 해당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<b>(관련학과) 학력 기준</b><br>· (석사학위 이하인 자)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br>· (박사학위 소지자)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br>○ <b>자격증 기준</b><br>·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이면서,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이후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br>○ <b>공무원경력 기준</b><br>·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이면서,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br>·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서,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br>○ <b>민간경력 기준</b><br>·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이면서,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|
| ※ 근 거 : 「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 예규 제352호)<br>※ 보건 등 관련분야 (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):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(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에 따른 보건 등 직렬)<br>※ 경력경쟁임용등(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)에 따라 임용되는 자의 근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5. 시험방법

### 가. 1차 시험: 형식요건 심사(서류전형)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

### 나. 2차 시험: 적격성 심사(면접시험)

-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 검증
-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, 공직에 대한 가치관 등을 심사

## 6.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

### 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**2026. 10. 6.(화) ~ 10. 13.(화)** [5일간, 평일 09:00~18:00]
  - 접 수 처: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총무과 인사팀 (서관 2층)
  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
    -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[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]
    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채용 담당자(032-726-6233)에게 연락하여야 함
    - 주소: (23543)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, 검단구청 총무과 인사담당 앞
    - **응시수수료 동봉(우체국에서 해당금액 우편통상환증서로 교환 증서 받는 자 미기재)**
- ※ 현금 및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, 우편통상환 발행은 금융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함에 유의

### 나. 시험일정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6. 10월중(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)
  - 면접시험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  -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10월중(예정)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정확한 면접일정과 최종합격 여부 등은 반드시 검단구 홈페이지([www.geomdan.go.kr](http://www.geomdan.go.kr)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응시자가 없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
- ※ 재공고 시 동 채용분야에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

## 7. 제출서류

### 1. 응시원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(본인 자필로 작성)

- 수수료 - 5급/가급 이상: **1만 원**

※ 인천광역시검단구 수입증지(인증기증지)를 응시원서에 첨부/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
※ 접수일 현재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

### 2. 이력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### 3. 자기소개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
### 4.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
-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(사업)목표, 추진전략(방법)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

### 5.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(별지 5호 서식) 1부

### 6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6호 서식)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1부.

### 7.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7호 서식) 1부

### 8. 서류전형 제출서류(양식)(별지 8호 서식) 1부

### 9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(별지 9호 서식) 1부

### 10.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### 11.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, 직급(직위),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주당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.(발행기관의 직인,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)
  - ※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근무인정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받아 기재 제출
  - ※ 증명서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,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 확인(발급확인자 서명 날인) 받아 제출 가능
- 비상근·비정규직·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  - 예) 주당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2,080시간을(52주\*40시간) 만족해야 1년으로 인정함
-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기업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,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타등록증·허가증 등 기업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할 것

## 1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경력증명서 제출자)

## 13. 해당분야 자격증, 면허증 사본 1부(원본 지참, 해당자에 한함)

- ※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전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한글 번역본 첨부

## 8. 보수

-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34조 및 제35조 [별표13] 제5호의 나목에서 정한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임용예정자의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

(단위: 천원)

| 연봉등급   |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한액 | 하한액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|
| 개방형 4호 |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| -   | 70,490 |    |

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(예산 범위 내)

-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따라 급여 결정

## 9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안에 반환 가능합니다.
- 아래의 경우 응시수수료의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.
  - 응시수수료의 과오납 금액
  -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및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

### 수수료의 전액

- 시험 실시일 전(접수마감일 3일 초과 기간)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

-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,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-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.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(채용강요 등의 금지)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(부당한 청탁, 압력, 강요 등을 하는 행위, 금전, 물품,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)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면접시험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 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총무과 인사팀(☎ 032-726-62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업무수행 관련 문의사항: 검단구 보건소(☎ 032-726-2211)